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79
----------	-----

2021. 12. 30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1월 23일

-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연준 환경산림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의 연장과 변경된 법률명 등을 반영하고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사용범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환경보전기금 재원 법률명 등 변경(안 제3조제1항)
 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 「물환경 보전법」
 - 생태계보전협력금 → 생태계보전부담금
- 환경보전기금 사용 등 변경(안 제4조)
 -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
 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의 용도
 -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
-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0조)
 - 2021. 12. 31. → 2026. 12. 31.(5년 연장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안 제2조는 환경보전기금 재원 중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물환경 보전법」으로 법률 명칭 변경(2018. 1. 1. 시행) 사항과 「자연환경보전법」이 개정(2022. 1. 1. 시행예정)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보전부담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.
- 안 제4조는 「자연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의 재원인 생태계보전부담금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9조), 환경개선부담금(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), 배출부과금(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)의 처리규정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기금 사용범위를 구체화하였음.
- 안 제10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.

12. 31.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충북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함.
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1. 10. 1.~'21. 10. 2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의 사용범위를 재원의 업무처리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7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0월 29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연장과, 변경된 법률명 및 단체명을 반영하고,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사용범위 근거를 마련키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환경보전기금 재원 법률명 등 변경(안 제2조)
 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 「물환경 보전법」
 - 생태계보전협력금 → 생태계보전부담금
- 환경보전기금 사용 등 변경(안 제4조)
 -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
 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의 용도
 -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
-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0조)
 - 2021. 12. 31. → 2026. 12. 31.(5년 연장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“생태계보전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조제1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,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
2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의 용도
3.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
5.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

제10조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구성)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</p> <p>4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</p> <p>5. · 6. (생 략)</p> <p>제4조(기금의 사용 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</u></p> <p>3. <u>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</u></p>	<p>제2조(기금구성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----- ----- -----</p> <p>4. ----- 생 <u>태계보전부담금</u> -----</p> <p>5. ·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기금의 사용 등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자연환경보전법</u>」 제49조 생 <u>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</u></p> <p>4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2. <u>환경개선부담금 부과 · 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의 용도</u></p> <p>3. <u>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</u></p>

<p>4. <u>생태계, 생물종의 보존·복원 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</u></p> <p>5. <u>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10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1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<삭제></p> <p>5. <u>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6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
---	---

붙임 3. 관련법령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물환경보전법

부칙 <법률 제14532호, 2017.1.17.>

제7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종전의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□ 자연환경보전법

제49조(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)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광업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1. 1. 5.><시행 2022. 1. 6.>

1. 생태계·생물종의 보전·복원사업

1의2. 자연환경복원사업

2. 삭제 <2021. 1. 5.>

3. 삭제 <2021. 1. 5.>

4.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

5. 제19조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

6. 삭제 <2021. 1. 5.>

7. 삭제 <2021. 1. 5.>

8. 삭제 <2021. 1. 5.>

9.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

9의2.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

10. 삭제 <2021. 1. 5.>

11.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

12.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·유지·관리

13.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

14.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
제45조(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) 법 제49조제14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8. 5. 21.>

1. 삭제 <2013. 9. 23.>
2.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
3. 훼손·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
4.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

□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 처리규정

제34조(징수비용의 지급)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·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여비, 일용직인건비, 수용비 및 수수료, 자산 취득비, 물품구입비 등
2. 행정소송 비용
3. 신규부과대상 발굴자,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
4. 관계공무원의 활동비, 정보비
5. 관할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
6. 기타 시·도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

□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

제22조(징수교부금의 사용) ①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57조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지급된 교부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여비, 인건비(일용직을 포함한다), 수용비 및 수수료, 자산취득비등 배출부과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
 2.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
 3. 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에 참여하는 전문인사(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 업무가 직무인 공무원은 제외한다)에 대한 여비 및 수당
 4. 환경보전운동 캠페인 비용
 5.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
 6. 관계공무원의 활동비, 정보비
 7.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·자재, 차량 등의 구입
 8. 기타 시·도의 배출부과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(교부금의 10%이내로 한다)
 9. 환경개선사업(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, 수질배출부과금은 물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교부금의 30% 이내에서 사용한다.)
- ②제1항에 따른 용도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등은 시·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.